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98

발의연월일: 2021. 7. 14.

발 의 자:소병철・김병기・진성준

오영환 • 박성준 • 민병덕

권인숙 · 임호선 · 김정호

백혜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하면서도,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를 [별표]로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신속한 제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만 규제를 할수 있다는 제도적 공백을 가지고 있음. 또 현행법은 부패방지 관련법중 「국제뇌물방지법」제3조제1항 위반의 죄(외국공무원등에 대한 뇌물공여)만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까지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있어, 국내 공직자들의 공무상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효율적 제재가 부족한상황임.

한편, 독일·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범죄수익 은닉 등의 대상 범죄를 '일정 법정형 이상의 범죄'로 지정하는 '기준식' 방식으로 기술해 '열거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 TF) 권고 내용과도 같음.

이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서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를 삭제하는 대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기준식'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1호가목 신설). 또 몰수 대상의 지나친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재산의 성질·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몰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형법」 제129조부터 133조의 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의 죄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부패 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해 공직자 직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7)8)9) 신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 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중대범죄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중대범죄"를 "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에 7)부터 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나.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 7)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
 -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의 죄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대상재산이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 8)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	1
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u>별표에 규정된</u>	<u>다음 각 목의</u>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u>
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u>다음 각 목의 어</u>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	<u>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u>
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	
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	
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	
에서 행하여졌다면 <u>중대범죄</u>	<u>다음 각 목</u>
<u>또는 제2호나목</u> 에 규정된 죄	
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	
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	
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	
<u><신 설></u>	<u>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u>
	<u>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u>
	에 해당하는 죄

<신 설>

-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 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 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 수(報酬)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u><신</u> 설>

 3. ~ 5. (생 략)
 3.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 제8.

 ③ (생 략)
 ③

 <u><신</u> 설>
 ④

<u>나.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u> 2
가. <u>제1호가목</u>
나
1) ~ 6) (현행과 같음)
<u>7) 「형법」 제129조부터</u>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3조의 죄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
 9) 「부패방지 및 국민권
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의 죄
3. ~ 5. (현행과 같음)
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대

상재산이 재산의 성질, 사용 상

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 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 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몰수하 지 아니할 수 있다.